

# 인사관리규정 제12조

## <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>

-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- ⑧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
  - ⑨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  - ⑩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 - ⑪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  - ⑫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(경영진, 심사위원, 인사담당자 등)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
  -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⑭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 - ⑮ 부정합격으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